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개방형 직위 1개를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의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9급 1명)으로 전환하며,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계청과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2호, 별표 4 제2호 및 별표 5와 같다”를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제13조제2항 중 “마이크로데이터과장”을 “빅데이터통계과장, 조사시스템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3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663”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662”를 “666”으로 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52”를 “54”로 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18”을 “21”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2”를 “11”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4.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4.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2.0”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0”를 삭제한다.

별표 3의2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670”를 삭제

하고, 일반직 계 “669”를 “673”으로 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46”을 “48”로 하고,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2”를 “25”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12”를 “11”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4.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4.0”를 삭제하고,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2.0”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2.0”를 삭제한다.

별표 4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30”을 “32”로 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전산서기·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4”를 “5”로 하고, “방호서기보 1”를 신설하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2.0”를 삭제하며, “행정서기·통계서기·전산서기·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1.0”를 삭제하고, “방호서기보 1.0”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40”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340”을 “3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9”를 “341”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2.0”를 삭제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0”를 삭제 한다.

별표 5 제2호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292”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292”를 “29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91”을 “293”으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2.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2.0”를 삭제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0”를 삭제한다.

별표 5 제3호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331”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331”을 “33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0”을 “333”으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0”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3.0”를 삭제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3.0”를 삭제한다.

별표 5 제4호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223”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223”을 “224”로 하며, 4급 또는 5급 이하 “222”를 “223”으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고, “4급 또는 5급 이하 1.0”를 삭제한다.

별표 5 제5호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245”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245”를 “246”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이하 “244”를 “245”로 하고,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을 삭제하며, “일반직 계 1.0”을 삭제하고, “4급 또는 5급 이하 1.0”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 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통계청 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u>시간선 택제채용공무원</u> (이하 “ <u>시간선 택제채용공무원</u> ”이라 한다) 정 원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2호, 별표 4 제2호 및 별표 5 와 같다.	제10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 ----- ----- 공무원 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 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 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 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 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 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제1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라 <u>마이크로데이터과장</u> , 통계개 발원에 두는 실장 중 「책임운 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제1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빅데이터통계과장, 조사시스 템관리과장----- -----

를」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 정으로 정하는 실장 1명을 임기 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 -----.
---	--------------------------

신·구정원대비표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663</u>	<u><삭 제></u>	-663
·	·	·	
·	·	·	
일반직 계	<u>662</u>	<u>666</u>	+4
·	·	·	
·	·	·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u>52</u>	<u>54</u>	+2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18</u>	<u>21</u>	+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2</u>	<u>11</u>	-1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u>4.0</u>	<u><삭 제></u>	-4.0
일반직 계	<u>4.0</u>	<u><삭 제></u>	-4.0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u>2.0</u>	<u><삭 제></u>	-2.0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2.0</u>	<u><삭 제></u>	-2.0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670</u>	<u><삭 제></u>	-670
·	·	·	
·	·	·	
일반직 계	<u>669</u>	<u>673</u>	+4
·	·	·	
·	·	·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u>46</u>	<u>48</u>	+2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22</u>	<u>25</u>	+3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12</u>	<u>11</u>	-1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u>4.0</u>	<u><삭 제></u>	-4.0
일반직 계	<u>4.0</u>	<u><삭 제></u>	-4.0
행정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전산서기 또는 농업서기	<u>2.0</u>	<u><삭 제></u>	-2.0
행정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농업서기보	<u>2.0</u>	<u><삭 제></u>	-2.0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통계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 원은 제외한다) 계	· <u>30</u>	· <u><삭 제></u>	-30
· 일반직 계	· <u>30</u>	· <u>32</u>	+2
· ·	· ·	· ·	
행정서기·통계서기·전산 서기·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 <u>4</u>	· <u>5</u>	+1
· 방호서기보	· <u><신 설></u>	· <u>1</u>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u>2.0</u>	<u><삭 제></u>	-2.0
일반직 계	<u>2.0</u>	<u><삭 제></u>	-2.0
행정서기·통계서기·전산 서기·농업서기 또는 공업서기	<u>1.0</u>	<u><삭 제></u>	-1.0
방호서기보	<u>1.0</u>	<u><삭 제></u>	-1.0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지방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1. 경인지방통계청			
· 가.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 무원은 제외한다) 계	· <u>340</u>	· <u><삭 제></u>	-340
일반직 계	<u>340</u>	<u>342</u>	+2
· 3급 또는 4급 이하	· <u>339</u>	· <u>341</u>	+2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u>2.0</u>	<u><삭 제></u>	-2.0
일반직 계	<u>2.0</u>	<u><삭 제></u>	-2.0
3급 또는 4급 이하	<u>2.0</u>	<u><삭 제></u>	-2.0
2. 동북지방통계청			
· 가.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 무원은 제외한다) 계	· <u>292</u>	· <u><삭 제></u>	-292
일반직 계	<u>292</u>	<u>294</u>	+2
· 3급 또는 4급 이하	· <u>291</u>	· <u>293</u>	+2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u>2.0</u>	<u><삭 제></u>	-2.0
일반직 계	<u>2.0</u>	<u><삭 제></u>	-2.0

3급 또는 4급 이하	2.0	<삭 제>	-2.0
3. 호남지방통계청			
·	·	·	
가.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 무원은 제외한다) 계	331	<삭 제>	-331
일반직 계	331	334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330	333	+3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3.0	<삭 제>	-3.0
일반직 계	3.0	<삭 제>	-3.0
3급 또는 4급 이하	3.0	<삭 제>	-3.0
4. 동남지방통계청			
·	·	·	
가.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 무원은 제외한다) 계	223	<삭 제>	-223
일반직 계	223	224	+1
·	·	·	
4급 또는 5급 이하	222	223	+1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	<삭 제>	-1.0
일반직 계	1.0	<삭 제>	-1.0
4급 또는 5급 이하	1.0	<삭 제>	-1.0
5. 충청지방통계청			

·	·	·	
가.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 무원은 제외한다) 계	245	<삭 제>	-245
일반직 계	245	246	+1
·	·	·	
4급 또는 5급 이하	244	245	+1
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1.0	<삭 제>	-1.0
일반직 계	1.0	<삭 제>	-1.0
4급 또는 5급 이하	1.0	<삭 제>	-1.0